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강화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303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강화	2
※ 참고자료	11
1. 온가족보듬사업 개요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강화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6 및 제3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u>의료지원</u> , <u>주거지원</u> , <u>청소년활동지원</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생략) <u><신설></u>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료지원</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제31조에 따른 청소년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u> 2. <u>임대주택의 공급</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u>

현행	개정안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청소년부모지원시설: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u>

청소년부모¹⁾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를 말하며,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2년 2,353가구로 2018년(6,188가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청소년부모 가구 수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구수	6,188	4,900	3,760	2,954	2,353

자료: 통계청(2023) 「아동가구통계등록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법²⁾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협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는 주거지원도 포함되는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³⁾은 청소년부모와 그 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협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협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협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협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에 추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근 448명의 청소년부모를 표본으로 조사한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⁴⁾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주거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30.0%)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집(25.0%), 공공임대(18.9%), 전세(16.7%)가 뒤를 이었고, 자가(自家)는 4.4%에 불과하였으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로 ① 주거(69.0%), ② 일자리 확대(10.7%), ③ 자녀 보육 시설 및 서비스(6.0%) 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이른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다수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12.

보이는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주거기본법」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거기본법」 제15조⁶⁾에 의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며, 「공공주택

5)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특별법」 제2조⁷⁾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우선공급 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저소득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구 분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복주택	혼인 중인 사람[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무주택세대구성원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둘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의 운영 형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단위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가족센터의 역할을 통하여 청소년부모가 입주 가능한 각종 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온가족보듬’(구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상담지원, 학습·정서지원, 생활지원, 법률지원 및 지역사회자원(복지관, 후원 기관 등) 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온가족보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244개의 가족센터 중 220개소를 지원하고 있음.⁸⁾

< 최근 3년간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지원	129,624	156,409	162,497
학습·정서지원	58,915	72,787	80,180
생활도움지원	3,227	5,488	6,220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	51,931	61,770	55,015
합계	243,697	296,454	303,912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자료: 여성가족부

8) [참고자료 1] 참조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으며, 청소년부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복지시설보다 개별 주거 지원을 선호하므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족센터 지원을 통하여 각종 임대주택정책 등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주거지원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행 법률 규정으로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므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낮으며, 필요한 사항은 현행 법체계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온가족보듬사업 개요

□ 목적

- 1인가구,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및 경제·사회적 위험을 겪은 긴급위기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

□ 수행기관

- 17개 시·도 가족센터 등 220개소

□ 사업 내용

사업명(2023)	센터수	사업명(2024)	사업내용
가족희망드림지원	98개소	⇒ 온가족 보듬사업 (220개소)	• 1인가구 병원동행·긴급돌봄,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가족상담전문인력	183개소		• 노부모 부양가족 심리·정서 상담, 부양가족들 간 커뮤니티 운영, 노부모 케어 교육 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36개소		• 손자녀 돌봄 조부모 심리·정서 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73개소		• 저소득 취약가족 아동양육을 위한 상담·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등 맞춤형 사례관리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20개소		• 재난피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교육, 긴급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 등
원가정 회복지원사업	14개소		•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회복을 위한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관계 개선 등

자료: 여성가족부

